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36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급속한 신산업의 혁명적 발전은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신 산업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이 성공의 관건으로
- 21C 신산업인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우리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지원하고자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함 (제3조)
- 진흥원은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제6조)
- 진흥원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제7조)

- 진홍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 진홍원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제10조)
- 진홍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 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 한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자로써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 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5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진흥원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
4.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6. 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7.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제7조(재산출연)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8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생 략)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 6 (생 략)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 (생 략)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 6 (생 략)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② ~ ⑦ (생 략)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일 것
 2. ~ 3 (생 략)
 - ② (생 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② ~ ④ (생 략)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 ~ ③ (생략)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의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자치 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